“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제품리콜제도』 매뉴얼

– 지식경제부 소관 (소비생활용)제품을 중심으로 –

2011.6.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기술표준원

지역별·국가별 시장의 통합 및 글로벌화, FTA의 확대 등 국제 교역여건이 개선되면서 저가의 불법·불량 제품 및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신종 제품 등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 소비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용 의류, 완구 등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안전품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에 의한 안전한 제품의 제조·유통·판매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소비자에 의한 제품의 합리적 선택과 사용, 안전관리 당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완비 노력 등 사업자, 소비자, 정부가 각각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제품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제품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사고 확산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해정보를 소비자가 신속히 공유하여 문제의 제품을 리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조자 등 사업자는 정부에 제품사고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보고하고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하여야 하고, 정부는 소비자에게 위해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011년 2월 5일 “제품안전기본법”을 본격 시행하였고, 새롭게 시행되는 제품리콜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 사업자가 문제의 제품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소비자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리콜의 실시주체인 사업자가 취해야 할 단계별 조치방법 및 절차, 소비자에 대한 위해정보 제공 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제공함으로써, 이미 판매되었거나 유통 중인 위해제품에 대해 기업이 신속하게 리콜조치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오히려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갖게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

⊙ 목 차 ⊙

❑ “제품안전기본법” 에 따른 리콜제도 소개

1. 제품안전기본법 주요내용 ····· 1
2. 제품리콜제도 소개 ····· 2
3. 제품리콜 절차 ····· 4

❑ 지식경제부 소관 제품에 대한 리콜 매뉴얼

Ⅰ. 주요 검토사항 ····· 5
1. 제품의 정의 ····· 5
2. 제품사고 및 결함의 정의 ····· 7
3. 제품위해 및 사고정보에 관한 보고 ····· 10
Ⅱ. 제품리콜 진행절차 및 구분 ····· 12
1. 제품리콜 진행절차 ····· 13
①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조치 절차
② 기술표준원의 리콜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리콜조치
2. 리콜원인별 구분 ····· 20
①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요청에 따른 리콜조치(신속조치 제도)
② 기술표준원의 안전성조사에 따른 리콜조치
③ 제품사고에 따른 리콜조치

[첨부]
1. 제조 · 수입 사업자 사고정보 보고 서식 ····· 24
2. 판매사업자 및 관련단체용 사고정보 보고 서식 ····· 26
3. 소비자용 사고정보 보고 서식 ····· 28
4.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서식 ····· 29
5. 제품 수거 등 진척상황보고서 서식 ····· 30
6. 제품 수거등 결과보고서 서식 ····· 31

“제품안전기본법” 에 따른 리콜제도 소개

❶ 제품안전기본법 주요내용

「제품안전기본법」('11.2.5 시행)은 제조·설계·표시 등의 **제품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재산에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리콜권고** 또는 **명령**을 하고, **위해정도에 따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제품안전사고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법의 주요골자로는 사업자*가 제품의 결함 또는 위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정부에 보고하고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중대결함이 있는 제품은 정부가 리콜을 명령**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고 **수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사고의 과학적인 **원인분석**을 위해 **사고조사센터를 지정 및 운영하고,** 제품안전 취약기술개발을 위한 **R&D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등 제품안전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 : 제품을 생산·조립·가공 또는 수입·판매·대여하는 자

제품안전기본법 주요내용

① 시중 유통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조사 실시
② 제품사고의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조사 실시
③ 경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리콜 권고
④ 중대결함이 있는 제품은 리콜 명령과 동시에 사실을 언론에 공표
⑤ 제품 위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사업자의 보고 및 자발적 조치 의무 규정
⑥ 사업자가 제품 수거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조치 후 비용청구
⑦ 제품안전협회 설립, R&D 지원 법적근거 마련 등 제품안전체계 정비

❷ 제품리콜제도 소개

❑ 용어 정의

○ **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신체·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수거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본 매뉴얼에서는 이를 **"리콜"**이라고 정의함

- 또한, 물품의 품질·기능상의 일반적 하자에 대한 A/S와는 다른 개념으로, 안전기준의 미준수 또는 안전관련 결함에 한하여 적용되며 **거래상 발생한 문제나 단순 품질불량 등은 리콜 대상이 아닙니다.**

❑ 리콜의 주요형태

○ 수리 : 해당제품의 부품교환 등으로 결함의 완전한 시정이 가능

○ 교환 : 결함이 없는 동종 또는 동등한 다른 제품과 교체

○ 환급 : 결함제품의 수리 또는 사용이 불가능할 때 구입가격을 환불

○ 파기 : 결함제품에 대한 위해요인 제거와 보관비용 절감이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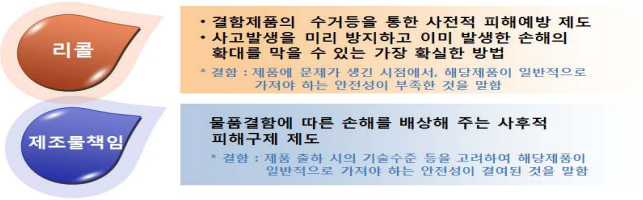
❑ 리콜의 유형

○ 리콜제도는 위해발생 여부에 따라 제품결함은 발견되었으나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적 리콜"**과 결함제품의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된 후에 소비자 위해의 확산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적 리콜"**로 나눌수 있습니다.

○ 또한, 강제여부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권고에 의해 시행하는 **"자발적 리콜"**과, 정부의 명령에 의해 시행하는 **"강제적 리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리콜과 제조물책임 제도와의 관계

○ **리콜제도**는 결함제품을 수거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이며, **제조물책임제도**는 물품결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주는 사후적 피해구제제도입니다.



구분	리콜제도	제조물책임제도
시점	소비자위해의 사전예방	소비자피해 사후배상
대상물품	결함물품 전체	결함이 발생한 특정제품
절차	수리, 교환, 환급, 수거 등	개별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법	제품안전기본법, 개별법	제조물책임법

❸ 제품리콜 절차

❑ 일반적 리콜 절차

○ 리콜은 ① 사업자가 상시적으로 **제품의 위험정보를 수집**하는 위험성 모니터링 단계, ② 제품의 결함이 인지된 후 리스크를 분석·평가하는 **위해성 평가 단계**, ③ **리콜여부 결정단계** ④ **리콜계획** 및 **실시 단계**, ⑤ **리콜추진과정 검토** 및 **종료단계**, ⑥ 리콜 완료 보고 후 **사후조치 단계**로 진행됩니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업자”라 함은 제품을 생산·조립·가공(이하 “제조”라 한다) 또는 수입·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함

<리콜 절차도>



지식경제부 소관 제품에 대한 리콜 매뉴얼

Ⅰ. 주요 검토사항

❶ 제품의 정의

❑ 제품의 기본적 정의

○ "**제품안전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소관하고 있는 제품의 범위**는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목적으로 통상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 다만, "자동차, 식·의약품, 의료기, 항공기, 철도" 등 해당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별도의 법률로써 **타 중앙행정기관이 관장하고 있는 제품은 제외됩니다.**

- 또한, 일반적으로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사용)하는 사람을 칭하는 것으로 건설기계 등의 자본재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 등은 **소비자의 영역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들이 동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물품은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편, "**부분품이나 부속품**"이란 사용자가 사업자인 경우가 많으며, 또한 제품에 조립되어 사용되어 일반 소비자가 시장에서 구입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생활용 제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에 조립되어 사용되지만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건전지, 타이어, 커터날 등은 **그 자체가 이미 부품이 아닌 제품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은 동법에 따른 제품에 해당됩니다.**

○ 제품 중 일부가 사무용으로 이용된 경우, 전기장판을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소파를 호텔 객실에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품은 동법의 대상이 됩니다. 즉, **제조사업자 등이 사무용으로서 제조 혹은 수입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품의 사양이나 판로 등을 판단하여, 일반 소비자가 마트 등의 점포나 인터넷에 의한 통신판매**

등에서 용이하게 구입가능하며 일반가정에서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동법에 따른 제품으로 해석됩니다.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기술표준원에서 소관하는 제품의 범위>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 따른 **공산품**

- "공산품" 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을 제외한다)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함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전기용품**

- "전기용품" 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구성 부분이 되거나 그 전기설비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함

◎ **기타, 타 부처에서 안전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생활제품**

<제외품목>

◎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보건복지부 소관)

◎ "화장품법" 에 따른 화장품(보건복지부 소관)

◎ "의료기기법" 에 따른 의료기기(보건복지부 소관)

◎ "약사법" 에 따른 의약품(보건복지부 소관)

◎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국토해양부 소관)

◎ "선박안전법" 에 따른 소형선박 등(국토해양부 소관)

◎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보호장치 등(노용노동부 소관)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방용품(소방방재청 소관)

◎ ... 기타

❷ 제품사고 및 결함의 정의

❑ 제품리콜 대상 요건

○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여기서 "**결함**"이란 제품에 문제가 생긴 시점에서 제품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조 정의)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불순물이 혼입되거나 조립이 잘못되는 등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당해 제품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품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공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품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사고원인을 안이하게 소비자의 과실로 결론짓지 말아야합니다.**

-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이 명확한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소비자에 의한 제품의 오사용이나 목적 외 사용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그것이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사고인지 아닌지 극히 신중하게 개별의 사고사례로 판단할 것이 요구됩니다.

○ 법령규제기준의 준수와 면책

- 행정상의 **안전규제기준의 준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으로서 그에 합치되는 것만으로 곧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품의 결함 여부를 판단할 때, 그러한 기준에 합치되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즉, **기준의 적합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곧 결함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련법령상의 안전기준 이상의 **자체적 안전기준을 정하여 이를 충족**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본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관련 제품사고 사례>

◎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교적 저렴한 절단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들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

☞ 이것을 단순히 **사용자의 오사용(과실)이라고 판단하여 제품 사고가 아니라고 결론짓는 것은 부적절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사는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절단기의 수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제품의 사양**(투입구의 폭이나 투입구로부터의 칼날의 위치) **등에 대해서는 업무용의 사양을 개량하지 않고,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의 사용을 고려한 설계·제조 변경을 행하지 않은 채로 계속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투입구가 넓으며 칼날의 위치 또한 아동의 손으로도 충분히 닿는 위치였으며, 투입구의 재질이 부드러워 간단히 손가락이 들어가는 등 제품의 결함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는 일본의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에서 정의하는 제품 사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이하게 아이들의 행동을 항상 감시하고 있지 않았던 사용자(부모)의 오사용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조물책임법 관련 제품결함 판례>

◎ **만 6세의 어린이가 문방구점에서 구입한 주사기를 가지고 놀다가 주사기의 바늘구멍이 막히자 주사기를 왼쪽 눈앞에 들이대고 주사기를 압축하는 순간 공기압력에 의하여 바늘이 튀어나와 왼쪽 눈을 다친 사고 발생**

☞ 원심은 "피고가 제조, 판매하고 있던 교재용 또는 완구용 주사기는 주사침을 주사기몸통에 부착시키는 합성수지 부분이 견고하지 못하고 엉성하여 이를 몸통에 부착시켜 공기를 압축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 주사침 부분이 쉽게 몸통에서 빠져 나올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는 주사기 재료가 저질일 뿐 아니라 **제조상의 잘못으로 인한 제품의 현저한 결함**이며, 또 **동결함은 외부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이를 제조한 피고가 동 결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정도**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결함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 동 주사기의 사용에 수반되는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 고 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제조자에게 결함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 주사기의 사용에 수반되는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실체법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기하여 **제조자의 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이 주목됩니다.
아울러, **관계 시험검사소에서 무하자 판정만으로 피해자의 과실의 존재를 다툴수 없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법령기준, 국가안전기준의 준수를 가지고서 곧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에 상응하는 것임**

○ **"제품안전기본법"과 "제조물책임법" 간의 비교**

- 제품의 결함의 유형 및 정의에 있어 두 법상의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은 유사하나, 두 법 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즉,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는 제품의 출하시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당해 제품에 통상적으로 있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것을 "결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품안전기본법"**에서는 제품의 불량이 생긴 시점에서 해당 제품에 통상적으로 있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것을 "결함"으로 규정합니다.

❑ 중대한 결함의 정의 (보고의무에 해당)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 의원, 병원,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조산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등

2. 화재를 일으킨 제품결함(제품 외부로 불꽃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제품결함은 제외한다.)

❸ 제품위해 및 사고정보에 관한 보고

❑ 보고의 의무

○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판매·유통하는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법 제13조)

* **첨부 1** : 사고정보 보고서(제조수입 사업자용, 판매사업자 및 관련단체용, 소비자용)

- 여기서, "**즉시**"라 함은, **통상** 위해사실을 알게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를 말하며, 법 제13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제출기한이 10일 이내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최대 10일 이내를 의미**합니다.

* **첨부 2** :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 **위반시 과태료 400만원 (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시행령 제26조)**

☞ **여기서, 중대한 결함인지에 대한 결정을 사업자 단독으로 판단하여 보고하지 않는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음**

* **중대한 결함이 아닌 경우에도 그 결함내용을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권장함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3조)**

* **즉시 보고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함(시행령 제14조제1항)**

① 해당 제품의 제품명·상표·종류·등급 및 호칭

② 해당 제품의 품목번호 및 제조 연월일(제조 연월일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 연월일을 말한다.)

❑ 보고의 주체

○ 보고의 주체인 **사업자라 함은** 제품을 생산·조립·가공(제조라 함) 또는 수입·판매·대여(유통이라 함)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품의 제조와 공급망에 있는 **모든 사업자가 보고의 대상자가 됨**을 뜻합니다.

- 제조사업자에 있어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형태의 제조품인 경우, 위탁처가 해당제품을 기획·설계하고 완성품의 점검을 자신이 책임을 지고 행하며,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경우 등 **단순히 제조행위를 외주할 뿐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탁처가 제조사업자로 간주됩니다.**

○ 다만, 소비자에게 유통된 제품에 대한 위해정보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가장 빠르게 접수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리콜과 관련된 신속한 처리절차 등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고 방법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조사과(☎ 02-509-7250-3, Fax 02-509-7350) 또는, 제품안전정보망(www.safetykorea.kr)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시 사실확인

○ 사업자는 사고의 발생에 대해 통지를 받았을 경우 사실 확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중대한 제품결함의 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속히 사고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확인 내용〉

① 사고정보 :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인적피해내용, 피해자 성별 및 나이, 인적피해 내용 등

② 제품정보 : 사고발생 원인, 제품 판매시기 및 수량, 제품 수입시기 및 수량, 해당제품 유통경로 및 유통현황 등

* **첨부 1** : 사고정보 보고서 참조

Ⅱ. 제품리콜 진행절차 및 구분

❑ 제품리콜 진행절차는 다음 2가지로 구분됩니다.(진행절차)

1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조치

○ 사업자 스스로 위해정보를 입수하였을 경우, 기술표준원에 보고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 제13조)

2 기술표준원의 리콜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리콜조치

○ 기술표준원은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 리콜이 진행되지 않을시 위해정도에 따라 리콜권고 또는 명령을 이행**하게 됩니다.(법 제10조 및 제11조)

❑ 제품리콜은 다음 3가지로 인해 추진됩니다.(원인별 구분)

1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요청에 따른 리콜조치

○ 사업자 스스로 위해정보를 입수하고 자발적인 리콜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기술표준원에 보고하고 자발적 리콜절차에 따라 리콜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사업자가 스스로 자발적 리콜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기술표준원에 보고**하고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함

2 기술표준원의 안전성조사에 따른 리콜조치

○ 소비자·사업자의 요청이 있을시 기술표준원은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검토 후 필요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위해성이 입증되는 경우 리콜권고 또는 명령 등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 단,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이행할시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리콜 이행

3 제품사고에 따른 리콜조치

○ 제품사고 발생시 기술표준원의 사고조사 절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고 제품결함이 발견될시 리콜조치를 이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

* 단, 사업자가 신속히 자발리콜을 이행시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리콜 이행

❶ 제품리콜 진행절차

1.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조치 절차

사업자가 자사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였을 경우, **즉시 기술표준원에 보고하고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1 제품리콜 계획서 제출

○ 위해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술표준원장에게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합니다.(시행령 제14조)

2 자발적 리콜 공표

○ **(배포방법)** 기술표준원은 자발적 리콜시행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보도참고자료"를 작성후 **사업자와 주요 사실관계 및 발표일시 등의 구체적인 협의 후** 지식경제부 홍보지원팀을 통해 **배포**하게 됩니다.

○ **(보도자료 배포 주체)** 사업자가 리콜대상 제품의 모든 구매자들을 파악하여 그들에게 직접 통지할 수 없는 한, 일반적으로 **기술표준원이 사업자와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 **(보도문 작성) 기술표준원은** 제품을 리콜하는 **사업자와 협의하에 보도자료 문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보도자료 배포를 위해 합의된 문안은 다른 통지문 작성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게 됨으로 **사업자에 의한 일방적인 발표가 진행되지 않아야합니다.** 이는 기술표준원과 사업자가 같은 주제에 관해 다른 발표를 하게 되면 언론매체와 일반대중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첨부자료)** 또한, **자발적 리콜 대상제품에 대한 세부정보 등을 첨부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해당제품에 대한 조치내용 등을 담은 세부자료로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여 언론공표시 소비자 또는 해당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자발적 리콜 공표양식>

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http://www.mke.go.kr http://www.safetykorea.kr

"○○○○" 자발적 리콜 시행

- 회사명 : ○○○(주), 품목 : ○○○○○ -

□ (개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주)"와의 협의를 통해 "○○제품"을 소비자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사업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알았을 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 스스로 행하는 것을 말함

○ (리콜원인) "**(주)○○○**"는 ○○로 인해 발생할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을 ○○하는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는**것이라고 밝힘

○ (조치내용) 해당제품은 **○○년 ○○월 ○○일 이전에 제조 및 판매된** ○○로 ○월 ○일부터 ○○를 통해 ○○**을** ○○해 줄 계획임

<공표 첨부자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자발적 리콜**	http://www.safetykorea.kr [관리번호 2011-**호]

사업자명		**사업자 연락처**	* 콜센터 등 리콜전담 전화번호
제품명		**상표**	
		모델명	
제조국		**조치사항**	* 환급, 교환, 수리 등 리콜방법
제품 상세내용	* 소비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 리콜대상 제품인지를 인지할수 있는 방법 표시 예)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에 제조년월이 00년 00월 이전제품 예)제품○○부위에 표시되어 있는 제품일련번호 ABC00***인 제품	**리콜수량**	* 해당제품의 리콜수량 기재 예) '00년 00월부터 00월까지 생산 판매된 제품 **대
위해내용 (관련기준)	*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 또는 위해를 끼친 내용 상세기입 예) 자전거 프레임 절단으로 위해의 가능성 있음(끼칠 수 있는 가능성 기입) 예) ○○제품의 날카로운 부품으로 인한 피부외상 발생(끼친 내용 기입) * 관련 안전기준 및 표준에 대한 내용 기입 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이륜자전거" 안전기준 위반		
사고사례	* 사고사례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성별,연령,피해부위,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 예) 5세 남성 어린이 발목부위에 5㎝ 가량 찢어짐 발생		
제품사진	* 리콜대상제품임을 확인할수 있는 부위를 표시해 줄 것을 권장함 <전체 제품사진>	* 제품 수리의 경우 조치전과 조치후의 사진 포함 <조치 전 사진> <조치 후 사진>	

3 제품리콜 진척상황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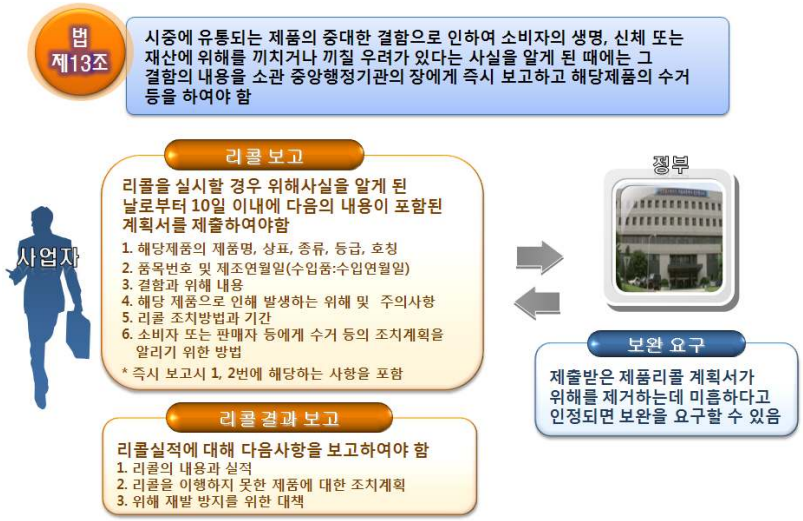
○ 리콜진척상황에 대해 **"제품 수거등 진척상황보고서**(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4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를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진척상황보고를 통해 리콜종료시점을 결정하게 됨**

4 제품리콜 결과보고

○ 리콜조치 후 **"제품의 자진 수거등의 결과보고서**(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4항)

◈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법 제27조제2항제3호 및 시행령 제26조)**



2. 기술표준원의 리콜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리콜조치

기술표준원은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한 **자발적 리콜이 진행되지 않을시 위해정도에 따라 리콜권고 또는 명령을 이행**하게 됩니다.

가. 리콜권고

1 리콜권고 사유 및 사업자 의무

○ **(권고사유)** 기술표준원은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리콜을 권고**하게 됩니다.(법 제10조제1항)

1. 해당 제품의 제품명·상표·모델명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수락 여부 통지기한
5. 수락 거부 시의 조치
6. 그 밖에 기술표준원장이 리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업자의 의무)** 리콜을 권고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기표원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제2항)

1. 사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권고의 수락 여부
3.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4. 리콜의 시기·방법 등 조치계획
5. 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2 리콜권고 공표

○ 기술표준원은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실*을 **공표**하게 됩니다.(법 제10조제2항)

1. 해당 제품의 제품명·상표·모델명
2.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3. 권고의 사유 및 내용
4. 권고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5. 그 밖에 기술표준원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리콜권고 공표양식〉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리콜 권고	http://www.safetykorea.kr [관리번호 2011-**호]

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자 연락처	
제품명		상표	
일련번호 (로트번호)		모델명	
권고사유			
권고내용			
기 타			
제품사진			

3 제품리콜 진척상황 보고(리콜 이행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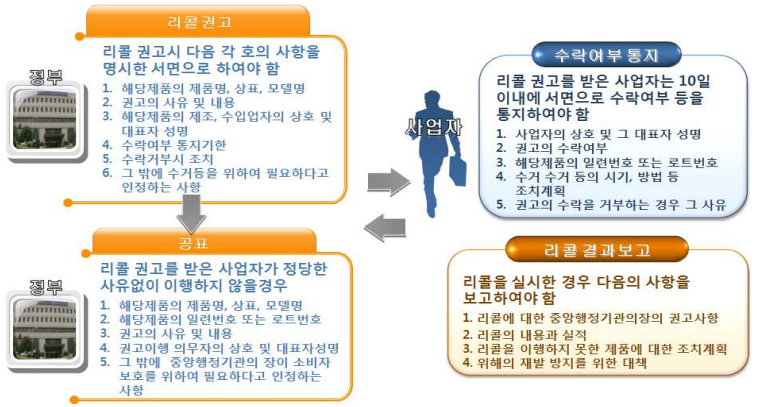
○ 리콜진척상황에 대해 **"제품 수거등 진척상황보고서**(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4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를**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진척상황보고를 통해 리콜종료시점을 결정하게 됨**

4 제품리콜 결과보고(리콜 이행시)

○ 리콜조치 후 **"제품 수거등 결과보고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령 제8조제2항)

◈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시행령 제26조)**



나. 리콜명령

1 리콜명령 사유

○ **명령사유** : 기술표준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제품의 사업자에대하여 제품리콜을 명령하게 됩니다.(법 제11조제1항)

가. **안전성조사 실시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나.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다.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중대한 결함의 범위(시행령 제10조)

1. 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2. 화재를 일으킨 제품결함(제품 외부로 불꽃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제품결함은 제외한다.)

2 리콜 공표

○ 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에 대한 사항을 신문·방송 또는 제품안전정보망(www.safetykorea.kr) 등을 통하여 **공표**하게 됩니다.(법 제9조제2항)

<리콜명령 공표양식>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리콜 명령	http://www.safetykorea.kr [관리번호 2011-**호]

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자 연락처	
제품명		상표	
일련번호 (로트번호)		모델명	
명령사유			
명령내용			
기 타			
제품사진			

3 제품리콜 진척상황 보고(리콜 이행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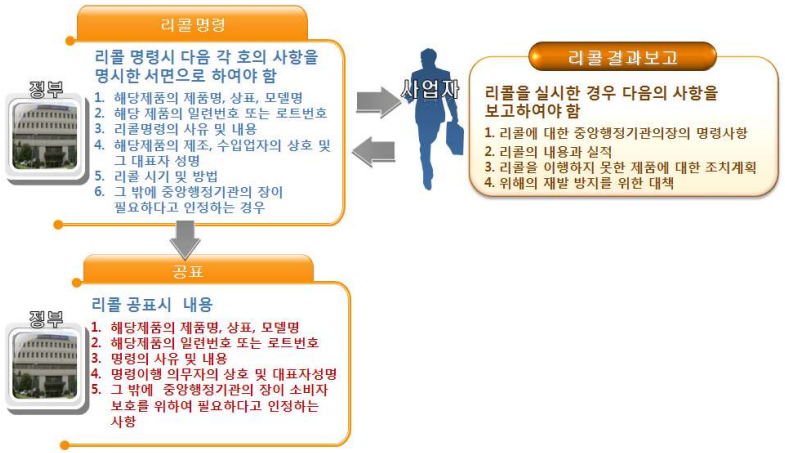
○ 리콜진척상황에 대해 **"제품 수거등 진척상황보고서**(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4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를**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진척상황보고를 통해 리콜종료시점을 결정하게 됨**

4 제품리콜 결과보고(리콜 이행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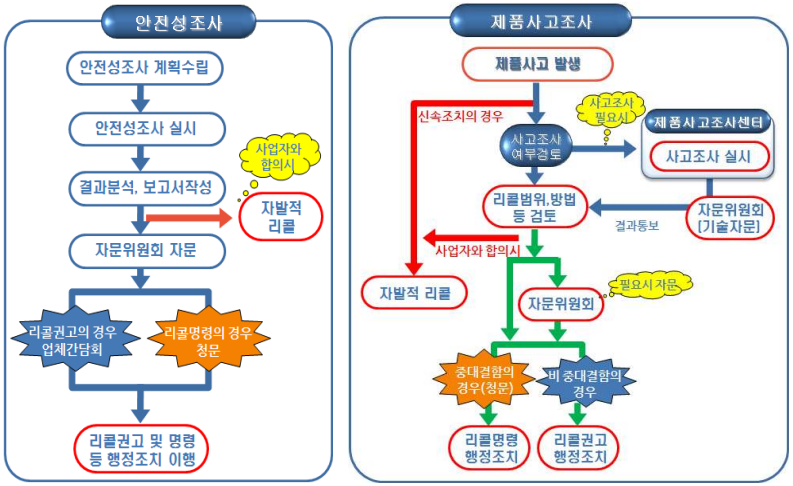
○ 리콜조치 후 **"제품 수거등 결과보고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령 제8조제2항)

◈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시행령 제26조)**



❷ 리콜 원인별 구분

〈리콜원인 별 리콜절차도〉



1.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요청에 따른 리콜조치 (신속조치 제도)

○ 사업자가 자발적 리콜조치 이행을 위해 기술표준원에 통보하면, **기술표준원은 추가적인 사고조사 없이 사업자와 리콜절차 등을 협의하여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게 됩니다.

＊ 절차는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조치 절차와 같음

2. 기술표준원의 안전성조사에 따른 리콜조치

○ **(개요) 소비자 혹은 사업자가 요청이 있을시 기술표준원은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검토 후 필요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위해성이 입증되는 경우 리콜권고 또는 명령 등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 단,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이행할시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리콜 이행

○ **(리콜대상 요건) 안전성조사의 경우 리콜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주요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① 각 법령에 따른 안전인증 등의 관리대상 제품인 경우 해당 안전기준
② 각 법령에 따른 관리대상제품이 아닌 경우 관련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
③ ①과 ②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 관련 단체표준 등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기준 또는 표준

○ **(리콜조치) 조사결과 리콜요건에 해당될 경우 리콜절차에 따라 리콜이 진행**됩니다. 즉, 사업자와 협의하여 즉시 자발적인 리콜조치 이행 또는 기술표준원이 위해의 정도에 따라 리콜권고 또는 명령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3. 제품사고에 따른 리콜조치

○ **(개요)** 제품사고에 대한 정보 입수 시 기술표준원은 사고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사고조사 필요시 지정된 제품사고조사센터* 중 적절한 조사센터에 사고조사를 의뢰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붙임 : 제품사고조사센터 참조

〈제품사고조사 실시여부 검토내용〉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7조)

1.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제품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고발생 원인규명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품사고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3.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 제품사고 발생 원인과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사업자가 실시한 제품사고조사결과 수용)** 제품사고가 발생된 제품에 대한 사고원인과 경위를 해당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제품사고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기술표준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사고조사결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 **(보완요청)** 단,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제품사고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품사고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 생략)** 또한, 사업자가 제출한 제품사고조사결과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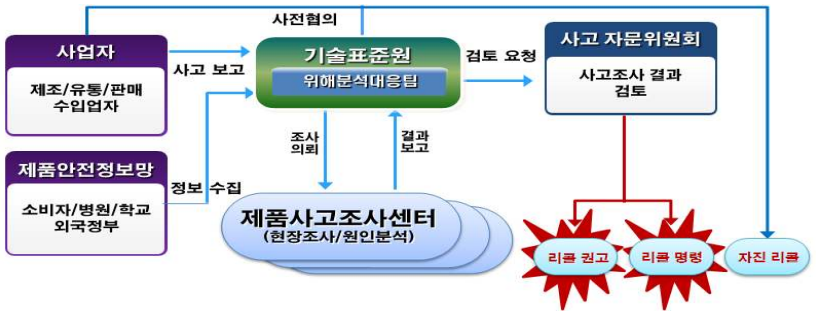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제품시험·검사·분석 등 제품사고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자문위원회 자문)**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및 전문가의 자문을 위해 기술표준원장은 필요시 각 분야별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 **(결과조치)** 사조조사 결과 제품의 결함이 입증될시 리콜절차에 따라 리콜을 진행하게 됩니다.

- **(자발적 리콜)** 단, 사업자가 자발적 리콜을 즉시 이행할 경우 기술표준원은 추가적인 사고조사 없이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즉시 **자발적 리콜조치를 이행**하게 됩니다.

< 제품사고조사센터 체계도 >



[붙임]

「분야별 제품사고조사센터」 현황

기 관 명 (소관 부처)	설립 근거	분야	소 재 지	사고조사 전담조직	비 고
한국기계연구원 (지식경제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법 제8조	기계	대전시 유성구	시스템신뢰성 연구실	신뢰성시험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지경부, 포스코)	포스코 출연	금속	경북 포항시	분석평가본부	대형사고조사, 신뢰성시험
전기안전연구원 (지식경제부)	전기사업법 제96조	전기 화재	경기도 가평군	설비안전연구팀	전기안전사고 조사기관
방재시험연구원 (화재보험협회 부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5조	화재	경기도 여주군	화재조사센터	일반화재 사고조사기관
한국화학연구원 (지식경제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법 제8조	화학	대전시 유성구	안전성평가연구소	독성평가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기술표준원)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	전기 전자	경기도 군포시	신뢰성평가팀	안전인증기관
한국건설생활 시험연구원 (기술표준원)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	생활 용품	서울시 금천구	화재안전팀	"
산업기술시험원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	전기 전자	서울시 구로구	신뢰성기술센터	"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기술표준원)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	화학	서울시 영등포구	기술컨설팅팀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기술표준원)	민법 제32조	섬유	서울시 동대문구	제품안전팀	"
FITI시험연구원 (기술표준원)	민법 제32조	섬유	서울시 동대문구	신뢰성평가센터	"

첨 부

[첨부 1] 제조 · 수입 사업자 사고정보 보고서식

사고정보 보고서

(제조·수입 사업자용)

제품명		품명(브랜드명)	
사고발생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쯤		
화재유무	1. 유 2. 무	제품위해 유무	1. 유 2. 무 (전체파손·일부파손·불명)
인적 피해 구분	① 사망()명		
	② 부상 또는 질병 : ()명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 부상이나 질병 내용 :		
	③ 부상 또는 질병 : ()명 (의료기관에서 4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 부상이나 질병 내용 :		
	④ 인적 피해 없음		
사고내용	① 사실관계 (상세히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기종에 의한 유사사고의 발생 건수 : 건(본건 제외) - 리콜 실적 유무 : 1. 있음 (년 월) 2. 없음		
	② 사고발생의 원인 1. 설계불량 2. 제조불량 3. 사용부품 또는 재료의 불량 4. 경년노화 5. 표시불량 6. 취급설명서 미흡 7. 기타 () (이하, 상세히 기술하시오)		
	③ 사고에 관계된 재발방지 조치 1. 제조 중지 2. 수입 중지 3. 판매 중지 4. 제품 개량 5. 제조공정 개선 6. 품질관리 강화 7. 제품 회수 8. 제품 점검·수리 9. 표시 개선 10. 취급설명서 개선 11. 특별히 조치하지 않음 12. 기타() (이하, 향후 판매하는 제품 및 기 판매된 제품과 관련되는 재발방지조치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시오)		
	④ 해당사고 원인을 조사한 기관 등의 명칭 및 연락처 - 기관명 : - 연락처 :		
	⑤ 사고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 및 연락처 - 명 칭 : - 연락처 :		

사고정보 출처 및 일시	① 사고정보 출처 :
	② 일시 : 년 월 일 오전·오후 시쯤
사고발생 장소	① 주소 : - 구체적인 장소를 기술하시오
해당제품의 제조시기 및 수량	① 시기 : 년 월 일에서 년 월 일까지
	② 수량 :
해당제품의 수입시기 및 수량	① 시기 : 년 월 일에서 년 월 일까지
	② 수량 :
해당 제품의 판매시기 및 수량	① 시기 : 년 월 일에서 년 월 일까지
	② 수량 :
제조·수입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① 명칭 : ② 보고자 업종 : 1. 제조사업자 2. 수입사업자 ③ 주소지 : ④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 () ⑤ 담당자 직책 및 성명 :

[첨부 2] 판매사업자 및 관련단체용 사고정보 보고서식

사고정보 통지서

(판매사업자 및 관련단체 용)

제품명		품명(브랜드명)	
사고발생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쯤		
사고발생 장소	주소 : - 구체적인 장소 :		
피해자	이름 : 성별 : 남·여 나이 : 세		
화재유무	1. 유 2. 무	제품위해 유무	1. 유 2. 무 (전체파손·일부파손·불명)
인적 피해 내용	① 사망()명		
	② 부상 또는 질병 : ()명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 부상이나 질병 내용 :		
	③ 부상 또는 질병 : ()명 (의료기관에서 4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 부상이나 질병 내용 :		
	④ 기타 경상 또는 질환(골절, 타박, 화상 등 내용기입) : - 병원치료()명, 가정내 치료 ()명		
	⑤ 인적피해 없음		
인적피해 외의 피해상황	① 제품파손 유무 : 있음 · 없음		
	② 해당 제품의 주변에 대한 피해확대 유무 : - 있음(내용 :)·없음		
제품의 구입 및 사용내용	① 구입 연월일 : 년 월 일 - 사용기간 : 년 개월		
	② 구입처 :		
사고내용	(상세히 기술하시오)		

사고원인 (귀하의 의견)	
피해자의 요구사항	1. 피해금액 변상 2. 제품 교환 3. 수리·개선 4. 위자료 5. 조사·원인규명 6. 사죄(다른요구사항 없음) 7. 기타 ()
제조사업자등 의 명칭 및 주소지	(명칭) : (업종) : 1. 제조사업자 2. 수입사업자 3. 판매자 4. 기타 (전화번호) : - 담당자 성명 :
통지서 작성자	(명칭·기관명) e-mail : (주소) : (전화번호) : (FAX) :

[첨부 3] 소비자용 사고정보 보고서식

사고정보 통지서

(소비자용)

제품명 (메이커명)		품명(브랜드명)	
사고발생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쯤		
사고발생 장소	주소 : - 구체적인 장소 :		
사고 통보자	이름 : 전화번호 : e-mail : 피해자와의 관계 : 피해자 성별 : 남·여 피해자 나이 : 세		
화재유무	1. 유 2. 무		
인적 피해 내용	① 사망()명		
	② 부상 또는 질병 : ()명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 부상이나 질병 내용 :		
	③ 부상 또는 질병 : ()명 (의료기관에서 4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 부상이나 질병 내용 :		
	④ 기타 경상 또는 질환(골절, 타박, 화상 등 내용기입) : - 병원치료()명, 가정내 치료 ()명		
	⑤ 인적피해 없음		
인적피해 외의 피해상황	① 제품파손 유무 : 있음 · 없음		
	② 해당 제품의 주변에 대한 피해확대 유무 : - 있음(내용 :)·없음		
제품의 구입 및 사용내용	① 구입 연월일 : 년 월 일 - 사용기간 : 년 개월		
	② 구입처 :		
사고내용	(상세히 기술하시오)		

[첨부 4]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서식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사업자	법인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보고자	(직급)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전자메일	
제품명			상표	
			모델명 (종류, 등급, 호칭)	
제조기간 (수입기간)			제조수량 (수입수량)	
판매기간			판매수량	
제품의 결함 또는 위해성				
수거등의 조치방법과 기간				
소비자, 판매자 등에게 수거등의 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계획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 5] 제품 수거등 진척상황보고서 서식

제품수거등 진척상황 보고서

사업자	법인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보고자	(직급)	(성명)	
	주소		전화번호 (FAX)	
			E-mail	
제품명			상표	
			모델명	
제조기간 (수입기간)			제조수량 (수입수량)	
판매기간			판매수량	
리콜 대상 제품 수 및 개시일자				
리콜 실적(진척율)				
향후 리콜 조치계획				
제품수거 등의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0조에 의거 제품 수거등의 진척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 6] 제품 수거등 결과보고서 서식

<table>
<tr><td colspan="5">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td></tr>
<tr><td rowspan="4">사업자</td><td>법인명
(대표자)</td><td></td><td>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보고자</td><td colspan="3">(직급) (성명)</td></tr>
<tr><td rowspan="2">주소</td><td rowspan="2"></td><td>전화번호
(팩스)</td><td></td></tr>
<tr><td>전자메일</td><td></td></tr>
<tr><td rowspan="2">제품명</td><td colspan="2" rowspan="2"></td><td>상표</td><td></td></tr>
<tr><td>모델명</td><td></td></tr>
<tr><td>제조기간
(수입기간)</td><td colspan="2"></td><td>제조수량
(수입수량)</td><td></td></tr>
<tr><td>판매기간</td><td colspan="2"></td><td>판매수량</td><td></td></tr>
<tr><td>권고/명령 날짜</td><td colspan="4"></td></tr>
<tr><td>권고/명령 내용</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수거등의 내용 및 실적</td></tr>
<tr><td colspan="5">수거등을 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td></tr>
<tr><td colspan="5">재발 방지 대책</td></tr>
<tr><td colspan="5">「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귀하</td></tr>
</table>